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28.(수) 11:00 < 12.29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28.(수)
담당 부서	지역경제진흥과 지역경제진흥과	책임자	과 장 김재은 (044-203-4420)
		담당자	사무관 신정대 (044-203-4423)

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

- '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증대 (전년비 109억↑, 2,031억원)
- 지식서비스산업 및 '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'에 대한 지원 확대
- 사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**는 '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'(12.27)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**「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」 일부를 개정*하고 '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**

*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고시 제2022-196호, 11.29일)

○ 이번 제도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**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** 및 포항 등 **'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'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**하고,

○ **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**하는 등 **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**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
□ **금번 고시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.**

❶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(고시 제13조, 제15조)

○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**지식서비스산업 기업**에 대한 **건설투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**

- S/W개발업, 프로그래밍업,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**건설투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범위를 확대***

 * 기숙사, 휴게실, 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후생 시설을 위한 근로환경시설 투자비 인정범위를 기존대비 3배 상향 (건설투자 및 기계장비투자비의 10% → 30%)

- 연구개발자,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큰 **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(1인당 월100만원, 12개월 한도)**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

❷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(고시 제3조, 제14조)

○ 「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이 본격 시행('22.2월)됨에 따라, **산업위기대응지역을**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하여 **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**

○ 특히, 올해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어 **'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'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***

 * 기존 토지매입비의 40%(최대), 설비투자금액의 14%(최대)를 지원하고 있었으나,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의 50%(최대), 설비투자금액의 24%(최대)

❸ 지방투자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(고시 제17조, 제10조)

○ **(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 완화)** 지방에 신·증설 투자 시, 지방투자기업은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축소, 폐쇄 등을 할 수 없으나,

-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**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기초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**하여 보조금 지원

○ **(타당성 평가기준 완화)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**할 수 있으나,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**평가기준 일부 완화**

-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

애로를 겪은 기업 중 **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, '투자계획평가'만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**

❹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 (고시 제20조, 제22조)

○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**업종 변경,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** 기초 지자체, 광역 지자체를 거쳐 **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**을 거쳐야 했으나,

-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, **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**될 것으로 기대

□ 또한,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기준(고시) 개정 외에도 코로나 19, 러-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**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**(표준단가 상향)하고, **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***하는 등 **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 밝혔다.**

* 보험료 기본요율 인하 협의 성과 : (기존) 2.041% → (개선) 1.531% (인하율 25%, 年0.51%↓) / 기업별 최대 4.5억원, 전체기업 연간 총 55억원규모 기업부담 완화

【붙 임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요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『지방투자촉진보조금』 지원제도 개요**

□ **(목적)**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○ 균특법 제정과 함께 '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 지원 시작

* (지원근거)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, 시행령 제17조, 지투보조금 지원기준(고시)

○ 신·증설투자('11년), 국내복귀('12년), 개성공단기업('14년),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('20년)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

□ **(지원내용)** 기업의 입지·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·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(국비+지방비 매칭)으로 지원 (국비:100억 限)

* 예산현황 : ('21년) 1,959억원 → ('22년) 1,922억원 → **('23년) 2,031억원**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(개정내용 적용) >

지원비율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균형발전 상위지역	- (설비) 3%	- (설비) 5%	(입지) 9% (설비) 7%	45 : 55
균형발전 중위지역	- (설비) 5%	(입지) 10% (설비) 7%	(입지) 30% (설비) 9%	65 : 35
균형발전 하위지역	- (설비) 8%	(입지) 20% (설비) 11%	(입지) 40% (설비) 14%	75 : 25
산업위기대응지역	- (설비) 11%	(입지) 25% (설비) 19%	(입지) 50% (설비) 24%	75 : 25

□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,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>

